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가.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  
분장이 변경되었음

나. 사무분장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 
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
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'행정부지사'에서 '자살  
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'로 변경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### 가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충청북도는 지난해 8월 9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계로 전환하고, 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제외)’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로 일원화했음<sup>29)</sup>

개정 전	개정 후
제4조(부지사) ① (생략)	제4조(부지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(다만, <b>경제부지사</b>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 3. <b>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</b> 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(다만, <b>정무부지사</b>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 3. <b>삭제 &lt;2024.8.9.&gt;</b> 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<b>경제부지사</b> 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<b>경제통상국, 과학인재국, 투자유치국, 바이오식품의약국, 환경산림국,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<u>경제관련 부서 업무</u>에 관한 사항</b> 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의 <b>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</b> 3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	③ <b>정무부지사</b> 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1. 도지사를 대리하여 <b>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(신설)</b> 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 관련된 <b>정무적 업무수행</b> 3. <b>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(제1호에서 이동 및 축소)</b> 4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9) 행정운영과-19823(2024. 8. 26.) 행정·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

-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정무부지사의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 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련 사무분장 범위를 **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항·국회** 등의 업무로 확정함<sup>30)</sup>
-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음

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이 개정안의 안 제9조제1항은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개정하려는 것임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<b>행정부지사</b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<b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b> 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- 위 개정은 앞서 언급한 사무분장 범위의 확정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고 내용 또한 적절함
- 또한, 정무부지사가 아닌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차후 부지사 명칭 변경 등의 사정 발생 시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

30) 행정운영과-27562(2024. 11. 27.)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및 결재방안 알림

\* 실국 사무 : 경제통상국, **보건복지국**, 과학인재국, **인구청년정책담당관**, 공항지원팀

○ 다만, 다음의 사항에 관해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설명이 필요함

- 1) 지난해 11월 27일 사무분장 범위가 확정되었으나, 조례 개정 없이 약 5개월간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<sup>31)</sup>
- 2) 또한, 현행 제9조제2항제1호<sup>32)</sup>에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명시되어 있음
  - 위원회 구성원에 행정부지사 포함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된다면, 위원회에 두 명의 부지사를 위원으로 구성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
  - 조례안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에 조례 개정 후 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행정부지사 대신 정무부지사가 위원장 및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항의 개정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

위원회 위원 현황(발체)(2025. 1. 기준)					
<b>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현황</b>					
□ 위원회 현황 : 15명(남7, 여7) / 임기 : '25.1.1~'26.12.31(2년)					
구 분	소속 및 직위	성 명	성 별	분 야	비 고
위원장 (당연직)	충청북도 정무부지사	김수민	여		
위원 (당연직)	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	장기봉	남		
위원 (당연직)	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	오경숙	여		
위원 (위촉직)	충청북도 도의회 의원 (교육위원회)	유상용	남	도의회	

※ 이하 위촉직 위원 생략

- 따라서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위해 제출된 안 제9조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제1호도 함께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

31) ① 사무분장 범위 확정 이후 2025년 1월·3월 임시회(제423회·제424회 임시회)에 제출했어야 했으나 지연 5개월이 지난 4월 임시회(제425회 임시회)에 제출한 사유  
 ②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관리하는 행정국과 협의하여 종전처럼 정무부지사의 사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개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

32)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  
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1.5., 2022.10.7.>  
 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<b>행정부지사</b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<b>행정부지사</b>,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<b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b>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보건복지국장,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</p>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(필요성)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,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범위 확정으로 조례의 위원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(정무부지사)로 개정하여 사무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
- (타당성) 또한, 차후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보다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
- 다만, 약 5개월간 개정을 서두르지 않은 점, 같은 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에 종전의 행정부지사가 포함된 것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점 등은 조례 내용의 정합성과 타당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해 보임